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19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서명옥 · 김기웅 · 조은희
박충권 · 엄태영 · 이현승
김정재 · 박대출 · 성일종
박성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톱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스톱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또한, 추가적인 잠정조치로서 스톱킹행위자에게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하되 해당 잠정조치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함.

그런데 스톱킹범죄는 장기간 반복·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폭행과 살인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잠정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잠정조치의 유형별에 따라 최초기간이 3개월인 잠정조치는 6개월로 확대하고, 1개월인 잠정조치는 2개월로 확대하면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스톱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 본문 중 “3개월”을 “6개월”로, “1개월”을 “2개월”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잠정조치에 대하여”를 “잠정조치는”으로, “한정하여 각 3개월”을 “한정하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각 기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정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⑥ (생 략)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u>3개월</u> ,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u>1개월</u> 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u>잠정조치에 대하여</u> 두 차례에 <u>한정하여</u> 각 <u>3개월</u> 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⑦ ----- ----- <u>6개월</u> ----- ----- <u>2개월</u> ----- ----- ----- ----- ----- --- <u>잠정조치는</u> ----- --- <u>한정하여,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u> 각 <u>기간</u> -----.